

**제2669호**  
**2019. 7. 10.**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 구 보

● 예 규

제170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 2

● 고 시

제2019-85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8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고시 제2019-1호 :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전고시 ..... 9

● 공 고

제2019-522호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 14  
 제2019-525호 :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15  
 제2019-528호 :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6  
 제2019-529호 : 공시송달 공고 ..... 19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예	규
---	---

서울특별시 증구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19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증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예규 제170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중구의회 명의의 후원 명칭 사용에 대한 신청과 승인에 있어 대상과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후원 명칭의 사용승인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중구의회 후원명칭"이란 후원명칭 사용이 승인된 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서울특별중구의회의 명칭, 휘장 등 의회 상징물 전체를 말한다.

제3조(승인대상) ① 후원명칭 사용은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여 법인·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무 또는 의정 활동과 관련이 있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성 행사
  4. 기타 공익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비영리성 행사
-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단체 및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전문적인 안전관리 및 예산의 지원이 요구되는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행사 등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신청요건 및 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행사개시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중구의회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안전 관리계획 포함)
  3. 신청단체의 현황
  4. 신청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표창장 및 상장의 수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표창장·상장수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6.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② 접수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용승인의 검토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단체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의 기준 및 절차) ① 제4조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의회사무과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의결한다.

1. 승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의 목적, 내용, 규모 및 공익성 행사인지 여부
3. 신청단체의 설립목적, 운영현황, 행사개최의 역량
4. 서울특별중구의회를 제외한 타 기관에 대한 후원요청 여부와 결과
5. 표창장 및 상장 수여 신청에 대한 타당성 여부
6.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

②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단체에 통보한다.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후원명칭 사용신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승인사항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원명칭의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의결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승인취소 등) ① 의회사무과의 장은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신청단체가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신청단체에 대하여는 최저 3년 이상 후원명칭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지도·점검) 의회사무과의 장은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행사진행 과정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9조(결과보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신청단체는 행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사 결과보고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발령 당시 이미 서울특별중구의회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행사는 이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안전관리 및 예산 지원 등을 포함한 후원기관 명칭 사용신청은 승인하지 않습니다.

<b>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신청서</b>				
주 최 기 관	명 칭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		
		팩 스		
E-mail				
<b>행 사 개 요</b>				
행 사 명				
행 사 목 적				
주요 행사내용				
후원승인의 필요성				
요청(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후원명칭 승인 <input type="checkbox"/> 상장 <input type="checkbox"/> 표창장			
후원예정기관명				
행사일시				
행사장소				
참석대상		참석인원 (추정)	명	
위 행사에 대한 귀 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 (직인)                     </div>				
<b>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회장 귀하</b> ※ 제출서류 1. 행사계획서(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참가비,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첨부) 1부. 2. 기관 및 단체의 현황(조직, 연혁, 인력현황, 사업 등) 1부. 3.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4. 상장등 요청시 별도 신청서 작성(별첨2호서식) 1부.				

【별지 제2호서식】

## 표창장 · 상장수여 신청서(예시)

수상자 선정 및 방법

<b>① 표창수여자 선정 및 심사방법</b>	(예시) - 심사위원회 구성현황(내부, 외부인사 구분) - 심사절차(예선, 본선) - 심사기준(예선, 본선) - 수상자결정방법(순위 및 점수)
<b>② 수상 내역</b>	(예시) - 대통령 표창 - ○명 - 서울시의장상 - ○명 - 서울시장상 - ○명 - 서울시중구의회의회장상 - ○명

**③ 수상자 인적 사항**

연번	구분	이름	직위(업)	소속	생년월일(남/여)	비고
	상장/표창					

※ 후원명칭사용과 상장 및 표창장 수여 동시 요청 시, 후원신청서(별지1호서식)과 함께 제출

※ 표창 또는 상장 수여 대상자가 행사 당일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수상자가 신청 시점에서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③번란은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 행사결과보고서

행사개요

① 행사명	
② 주최	
③ 일시	
④ 장소	
⑤ 기타	

행사 결과

- 행사홍보 또는 안내방법 (사본첨부)  
 - 시상내역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시장상 등)

평가 및 의견

※ 행사 사진 등 첨부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85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3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24-3	2019.07.10.	건물말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나길 19-16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84-13	2019.07.10.	건물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http://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



●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고시 제2019-1호

###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전고시

1.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로 태평로2가 재개발구역 및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26)로 서소문제2구역 재개발구역 지정되었다가, 건설부고시 제428호(1978.12.29)로 서소문구역으로 통합 및 사업계획결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38호(2009.12.24),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0-4호(2010.1.14.), 제2015-66호(2015.8.13.), 제2015-100호(2015.12.10), 제2019-36호(2019.4.11)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되어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6-6호(2016.1.20)로 사업시행인가, 같은고시 제2017-39호(2017.5.17)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되고 같은고시 제2016-37호(2016.4.27)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같은고시 제2019-79호(2019.6.26)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된 서소문동143번지일대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이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9-66호(2019.6.5.)로 공사완료 고시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02-3404-340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7월 10일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대표이사 김인환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명 칭 : 서소문구역 제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지적확정측량결과에 의함)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43번지일대
- 시행면적: 2,918.0㎡ (대지면적: 2,435.6㎡, 정비기반시설: 482.4㎡)

다.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14층
- 성 명 :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대표이사 김인환

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6. 4. 27. (최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2019. 6. 26.)

마. 공사완료 고시일 : 2019. 6. 5.

바. 이전고시 내역

○ 사업시행면적

종 전			확 정		
대지면적(㎡)		2,444.5	대지면적(㎡)		2,435.6
정비기반 시설면적 (㎡)	도로(대로1-4)	266.1	정비기반 시설면적 (㎡)	도로(대로1-4)	271.9
	도로(소로2-1)	93.0		도로(소로2-1)	96.1
	소공원	115.3		소공원	114.4
	소 계	474.4		소 계	482.4
계		2,918.9	계		2,918.0

○ 건축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용 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높이(층수) : 90.0m(지하7층/지상20층)
- 건축연면적 : 38,250.91㎡

※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별 세부내역(이전고시 대상면적) : 별첨

○ 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 : (주)생보부동산신탁

- 토지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대 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43	2,435.6		
정비 기반 시설	공 원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43-1	114.4 서울특별시 중구로 무상귀속	
	도로(대로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43-2	271.9 서울특별시로 무상귀속	
	도로(소로2-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43-3	45.8	서울특별시 중구로 무상귀속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43-4	50.3	서울특별시 중구로 무상귀속

- 건축시설

구 분	업무시설, 근생시설(㎡)	비 고
계	38,250.91	
토지등소유자	3,681.60	
체 비 시 설	34,569.31	
보 류 지	-	

- 이전 설정되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건수 : 없음

사. 관련서류 열람장소 : 사업시행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02-3404-3404)

별첨 :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별 세부내역(이전고시 대상면적)

연번	소유자	총전의 토지 및 건물						분양예정의 대지 및 건물				청산 징수, 교부금		비고	
		지번	토지(m <sup>2</sup> )		건물(m <sup>2</sup> )			소유자	지번	토지(m <sup>2</sup> )		건물(m <sup>2</sup> )	징수금		교부금
			지목	지적	구조	용도	면적			지목	대지지분				
1	(주)생보부동산신탁 (구.에스케이프앤씨(주))	서소문동 85-6	대	12.20				(주)생보부동산신탁 (구.에스케이프앤씨(주))	서소문동 143	대	234.42	연면적 38,250.91m <sup>2</sup> 중 3,681.60m <sup>2</sup>			
		85-7	대	5.00											
		85-8	대	1.00											
		114-1	대	33.10											
		84	대	112.40	철근콘크리트	사무실	678.09								
		84-1	대	13.20											
		84-2	대	68.40											
		90-3	대	26.40	세멘트 블록조	근생	20.69								
		90-4	대	38.70	철근콘크리트	사무실	246.96								
		116-8	대	98.40	철근콘크리트	근생	1,349.71								
		119	대	198.30	철근콘크리트	사무실	1,011.58								
		소계		607.10			3,307.03								
계			607.10			3,307.03	환지 소계		234.42	연면적 38,250.91m <sup>2</sup> 중					

연 번	소유자	총전의 토지 및 건물						분양예정의 대지 및 건물					청산 징수, 교부금		비고
		지번	토지(m <sup>2</sup> )		건물(m <sup>2</sup> )			소유자	지번	토지(m <sup>2</sup> )		건물(m <sup>2</sup> )	징수금	교부금	
			지목	지적	구조	용도	면적			지목	대지지분				
											3,681.60m <sup>2</sup>				
								체비지 (사업시행자)	서소문동 143	대	2,201.1 8	연면적 38,250.91m <sup>2</sup> 중 34,569.31m <sup>2</sup>			
1-1	(주)생보부동산신탁 (구. (주)하나은행)	서소문동 79	대	36.40											
		85-3	대	2,022.20	철근콘 크리트	사무실	9,738.34								
		114-2	대	54.50											
		소계		2,113.10			9,738.34								
1-2	(주)생보부동산신탁 (구. 김호영)	서소문동 83	대	108.80	철근콘 크리트	사무실	547.14								
1-3	(주)생보부동산신탁 (구. 서울시중구)	서소문동 42-6	대	7.60											
		42-8	대	8.30											
		111-5	대	3.50											
		소계		19.40											
1-4	(주)생보부동산신탁 (구. 서울시)	서소문동 78-2	대	0.30											
1-5	(주)생보부동산신탁 (구. 서울시교육감)	서소문동 85-9	대	69.20											

연 번	소유자	총전의 토지 및 건물					분양예정의 대지 및 건물					청산 징수, 교부금		비고	
		지번	토지(m <sup>2</sup> )		건물(m <sup>2</sup> )			소유자	지번	토지(m <sup>2</sup> )		건물(m <sup>2</sup> )	징수금		교부금
			지목	지적	구조	용도	면적			지목	대지지분				
		85-5	대	0.30											
		소계		69.50											
1-6	(주)생보부동산신 탁 (구.기획재정부)	서소문동 114-3	대	0.70											
		계		2,311.80											10,285.48
		서울시		서소문동 143-2	도	271.90									
		서울시중구		서소문동 143-1	공	114.40									
				서소문동 143-3	도	45.80									
				서소문동 143-4	도	50.30									
		소계				482.40									
총계				2,918.90				13,592.51	총계		2,918.00	38,250.91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522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고의 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9. 7. 10. ~ 2019. 7. 24.

**3. 공 고 대 상**

- 자동차등록번호 : 25누45\*\*
- 소 유 자 명 : 하\*\*
- 운행정지 명령일자 : 2019. 6. 3.
- 운행정지 사유 : 소유자 요청

**4.공 고 내 용**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2-3396-62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정지 자동차 현황**

연번	운행정지상태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소유자등록번호	사용본거지주소
1	등록	25누45**	하**	521113-1*****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8나길 ** (신당동)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9-525호

###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아 래 -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변경사항		
				구분	전	후
수질 -14호 대기 -5호 소음진동-2호	(주)대우건설	김 *	을지로 170, 에이동 (을지로4가)	소재지	종로구 새문안로 75 (신문로1가)	중구 을지로 170, 에이동 (을지로4가)

가. 공고기간 : 2019. 7. 10. ~ 2019. 7. 25. 까지

나. 공고방법 : 우리구 홈페이지에 전자 공시 및 구보게재. 끝.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528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가. 환경미화원의 주간근무 확대 원칙에 따라 작업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환경미화원 근로시간(사업과 종업사각) 일부 개정(안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 새벽근무 시간을 주간근무 시간대로 변경하고 청소작업별 근무시간을 세분화
  -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안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

###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전화 : 3396-5482, 팩스 : 3396-8754, email : (jaehunyu@junggu.seoul.kr,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가로환경미화원, 동배치환경미화원, 재활용품대형생활폐기물 수거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작업개시시간과 작업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재활용처리장환경미화원 등 그 밖에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은 근무여건에 따라 시간을 별도로 정한다. 다만,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한다.

1. 시업과 종업시각(월~금)

- 가. 가로청소작업 : 06:00 ~ 15:00
- 나. 동주민센터 관할지역 청소작업 : 07:00 ~ 16:00
- 다. 재활용품대형생활폐기물 수거작업 : 07:00 ~ 16:00
- 라. 재활용처리장 압축작업 등 : 작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실시

2. 휴게시간 : 작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실시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의 폭증·미세먼지주의보(경보) 발령·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의 작업개시시간 및 작업종료시간 등을 조정하거나 안전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b></p> <p>제27조(시업과 종업시각, 휴게시간)</p> <p>① 작업개시시간과 작업종료시간, 휴게시간 등 가로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그 밖에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은 근무여건에 따라 따로 시간을 별도로 정한다. 다만,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업시간 : 05:30</li> <li>2. 종업시간 : 14:30</li> <li>3. 휴게시간 : 작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실시한다.</li> </ol>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의 폭증·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의 작업개시시간 및 작업종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b></p> <p>제27조(시업과 종업시각, 휴게시간)</p> <p>① 가로환경미화원, 동배치환경미화원, 재활용품·대형생활폐기물 수거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작업개시시간과 작업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재활용처리장환경미화원 등 그 밖에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은 근무여건에 따라 시간을 별도로 정한다. 다만,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업과 종업시각(월~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가로청소작업 : 06:00~15:00</li> <li>나. 동주민센터 관할지역 청소작업 : 07:00~16:00</li> <li>다. 재활용품·대형생활폐기물 수거작업 : 07:00~16:00</li> <li>라. 재활용처리장 압축작업 등 : 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실시</li> </ol> </li> <li>2. 휴게시간 : 작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실시</li> </ol>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의 폭증·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의 작업개시시간 및 작업종료시간 등을 조정하거나 안전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529호

##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12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에 따른 고지문을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 고 명 :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7. 10. ~ 7. 24. (14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상세주소 직권부여에 관한 사항(붙임 참조)
5.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 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 공시송달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부여 현황	통보 대상자	통보대상자 주소
1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가길 57 (신당동)	201	김*수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다길 7 (신당동)
		101		
		B101		
2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가길 61 (신당동)	301	이*우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가길 61 (신당동)
		201		
		101		
3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나길 11-8 (신당동)	B101	표*호 김*애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나길 11-8 (신당동)
		301		
		201		
4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나길 15-3 (신당동)	101	이*찬 이*중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나길 15-3 (신당동)
		B101		
		301		

		101		
		B101, B102		
5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8길 65-1 (신당동)	401	이*구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8길 65-1 (신당동)
		301, 302		
		201, 202		
		101, 102		
6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8길 66-7 (신당동)	401	한*희 황*호 한*진 최*순 정*종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8길 66-7 (신당동)
		301		
		201		
		101		
7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8길 72 (신당동)	401	전*현 김*식 권*혜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8길 72 (신당동)
		301		
		201		
		101		
8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8길 74 (신당동)	301, 302	김*천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8길 74 (신당동)
		201		
		101, 102		
		B101, B102		
9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8길 76 (신당동)	201	황*심 조*용 김*자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8길 76 (신당동)
		101, 102		
		B101, B102, B103		
10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2길 31 (신당동)	201	김*길 김*민 고*영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2길 31 (신당동)
		101		
		B101, B102		
11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길 83 (신당동)	401, 402	이*갑 원*일 박*하 박*자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길 83 (신당동)
		301, 302, 303		
		201, 202		
		101		
12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나길 14 (신당동)	301	원*희 김*희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나길 14 (신당동)
		201, 202		
		1층 B101		
13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나길 14-4 (신당동)	401	조*순 이* 이*준 김*덕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나길 14-4 (신당동)
		301		
		201, 202		
		101		
14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나길 17 (신당동)	B101, B102	백*숙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나길 17 (신당동)
		301		
		201		
		101		

연번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부여 현황	통보 대상자	통보대상자 주소
15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나길 24 (신당동)	501	장*애 이*규 윤*진 안*숙 박*석 김*정 김*환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나길 24 (신당동)
		401, 402, 403, 405		
		301, 302, 303, 305		
		201, 202, 203, 205		
		101, 102		
16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다길 13 (신당동)	401	안*수 김*덕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다길 13 (신당동)
		301		
		201, 202		
		101, 102		
		B101, B102		
17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다길 13-6 (신당동)	301	임*수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다길 13-6 (신당동)
		201		
		101		
		B101		
18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다길 14 (신당동)	201	정*만 이*서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다길 14 (신당동)
		101		
		B101		
19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8길 61 (신당동)	401	이*숙 정*영 장*환 임*일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8길 61 (신당동)
		301		
		201, 202		
		101, 102		
		B101, B102		
2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6가길 29 (신당동)	301	전*석 김*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6가길 29 (신당동)
		201, 202		
		101, 102		
		B101		
2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6가길 34 (신당동)	301	최*희 김*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6가길 34 (신당동)
		201		
		101, 102, 203		
		B101, B102, B103		
22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6길 97-8 (신당동)	201	황*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6길 97-8 (신당동)
		101		
		B101		